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0대 정신건강 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정이유

우울증과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·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우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50대 정신건강 검진·상담지원사업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정신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원대상, 지원내용을 정함(안 제4조 ~ 안 제6조)
- 다. 정신건강검진비 청구 및 지급 규정(안 제7조)
- 라.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- 마. 검진기관의 검진비 허위 또는 부당 청구시 환수조치 및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정신보건법」 제4조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2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시비 100%)
- 다. 기 타
 - 1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 - 2) 입법예고 : 2016.3.2. ~ 2016.3.22.(20일 이상)
 - 3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없음
 - 4) 부패영향평가 : 검진비 청구서 및 청구 내역서의 제출기한을 규정 하라는 의견이 있어 안 제7조에 반영함

5) 성별영향평가 : 정신건강검진 상담을 위한 기본계획 등에 구민들의 기본현황과 성별특성 등이 반영되고,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질환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상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의료기관 선정을 위해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라는 의견이 있어 안 제3조 및 안 제7조에 반영 함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0대 정신건강 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0대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50대 정신건강 검진·상담”(이하 “정신건강검진”이라 한다)이란 50대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.
2. “정신건강검진비”(이하 “검진비”라 한다)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·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.
3. “정신건강검진기관”(이하 “검진기관”이라 한다)이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50대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고,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,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2. 지원대상의 지원내용과 관련된 성별 통계 현황
3.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검진기관의 지정)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

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정신건강검진 지원대상은 50대 구민 중 본인이 건강검진 및 상담을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,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.

제6조(지원내용)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)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진비 청구서 및 청구내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검진기관명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지원 대상자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진료내역
3. 검진비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.

제8조(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
2. 정신건강검진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
3.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

4. 검진기관의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「정신보건법」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신하여 운영한다.

제9조(환수조치 등)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제10조(검진기관 지정 취소)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0대 정신건강 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홍보 등의 비용 발생
-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검진료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시비 지원 사업이며 연평균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
비용추계서 생략함

4. 작성자

의약과 가족보건팀 김미진(☎02-330-8685)

관 계 법 령

□ **정신보건법** [시행 2015.11.19.] [법률 제13323호, 2015.5.18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신질환을 예방하며, 정신질환자의 치료·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 지도·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
□ **보건의료기본법** [시행 2015.12.29.] [법률 제13649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]

제42조(정신보건의료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